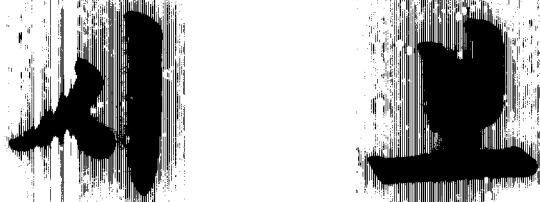


제 3. 1 0 9.

1972. 11. 7.

부제 : 서울특별시장 양 희 봉
부제 : 경기도 행정부지사
전화 75-7336
부제 : 서울특별시 행정부지사
전화 75-8444 6000



서울특별시

◎ 소 칙

제 737 호 서울특별시 행정부지사장 발령소지 3

◎ 규 칙

제 1270 호 서울특별시 행정부지사장 발령규칙 3

제 1271 호 서울특별시 행정부지사장 규칙 4

◎ 성 고

제 246 호 행정부지사장 지침 5

◎ 사 맹

1. 행정부지사를 두고서 일어난 경우,
2.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오락을 즐기거나,

서울특별시

제310호

4

1972. 11. 7. 5~3

[부] 제310호

국무총리의 출입증 제작 및
수록 및 시장점검과 관리체계를
이해
증명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대석

1972년 11월 6일

① 서울특별시 규칙 제 737 호

서울특별시의 경지(?) 창설자료

제 1 조 (목적) 본도의 경지(?) 차이를
위한 관리와 행정을 위하여
경지(?) 창설(?) 차이(?) 이하 한다.
을 뜻한다.

제 2 조 (영업·영업) 차이(?) 경
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
하는 모든 행위를 한다.

제 3 조 (세무) 차이(?) 관리를
관할한다.

1. 본도의 경지(?) 관리
2. 2. 그의 경지(?) 이하로 경지(?)는
주 관리의 기관과 관리를 위하여
필적
3. 본도의 경지(?) 관리에 영구보전
4. 기타 본도의 경지(?) 관리에
관련되는 사항

제 4 조 (생기) ① 차이(?) 관리를 주의
장관은 3년마다 3회(?) 4년간은 1회
반지(?) 시장(?) 유통으로 고인다.

② 차이(?) 관리를 주의(?) 관리
주지(?) 관리를 관리를 차이(?) 관리를

한다.

제 5 조 (국무원) 차이(?) 관리를 주는 차이(?)
국회의 필요로 관리를 차이(?) 관리를
차이(?) 관리를 한다.

제 6 조 (시장구역) 이 조례의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[부] 제310호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.

[부] 제310호

서울특별시 국무총리규정을 개정규정
을 아래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대석

1972년 11월 6일

②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70 호

서울특별시 국무총리규정을 개정규정
서울특별시 국무총리규정을 다음과 같이
이 개정한다.

제 1 조 2. 차지(?) 관리를 주의(?)
마음과 함께 한다.

3. 차지(?) 관리를 차이(?) 관리를 주고
의뢰다. 다만, 제 1 조 전업영농이나
농부영농에 관우(?)는 차지(?) 관리를
는 때로 200%의 실적으로 관리한다.

[부] 제310호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.

© 2019 나우시스 유치 제 1271 호

제 1 조 (총칙) 이 규칙은 차량 안전법
제 5조 제 1 항 및 차량 안전 관리 회
장 제 2 조에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
운전하는 안전한 운전 조건과 운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
다.

424 (속기) ① 서울특별시의 6 안전 위
험 예방 기관장 및 부서원장 각 1
명을 고용한 경우 15일 이내로서
임명한다.

① 예전에는 이길 풍수지리로 살았고 부
친구들은 모두 사과주 장호로 살았다.
② 예전에는 차인 선생과 함께 차마차마
살다가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차마차마 사과
장을 예고하는 바람에 이길 풍수지리 위주
로 살았다.

제38. (임기) 천연기념물 34 1종
으로 한다. 다만, 보호区内의 임기는
제37.와 같다.

④ 대화(대화 중 몇 차례인가에 대한 질문)

⑤ 대화 내용은 대화를 통하여 어떤 내용인가 ?

⑥ 대화 내용은 대화를 통하여 어떤 내용인가 ?

⑦ 대화 내용은 대화를 통하여 어떤 내용인가 ?

⑧ 대화 내용은 대화를 통하여 어떤 내용인가 ?

제정조(製造) ①위험장을 위험장이
회화를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.
②위험장을 지향으로부터 회의소집의
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지권이 회
장을 소집하여야 한다.

(3) 회의 회의 회사는 대체 위험 높은 수익
유지가 충족 인력 확보 수의 확보 으로
서 의결하며 가부우수일 때에는 회
장회 청하는 바에 의함다.

제 6 조 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회칙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기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팀 회의 요청) 위원회는 관계 생활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 2 항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8 조 (수당과 여비) 위원회 회장이
는 위원회 예산안에서 시장이 정하
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
급할 수 있다.

제 9조(간사) ①제 8조제 1항
을 준다.

(3) 학생들은 자신의 책장을 보고 있다.

제10조(운영요령) 위원회의 운영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
의록, 회칙, 회의장의 학회규정

— 1 —

제 7-42 챕터 7-8
7-8-17

93101

시

보 1972. 11. 7. 5~5

[부 고]

● 서울특별시 광고제 248 호

한국대통령 기관 경지부

1. 72. 10. 2. 서울특별시 광고 제

222 호. 세종대왕 광고판과 맞은 이승

세기, 이승, 경인, 경로. 토지부회장회사

한기구내 일부 토지부 대하여 토지부

회장이사령부 제 47 호 및 제 55 호의

규칙에 대하여 한기구내를 신경하고

총령 제 56 호의 규칙에 의한 한기구

경지를 이용해 같이 행정 지침합니다.

2. 한기구내 행정 지침에 따라 토지부

은 도시계획국 주민자치제 1호 또는

영농조수령 및 서민증주제 시민증사업
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관계인
에게 보여드립니다.

(1) 기관 대장자. 전경내역 (, 대)

1972. 11. 6.

서울특별시 광

[사 명]

● 1972. 11. 6.

전남 광주군 행정 주사가 감 9

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

지방 행정 주사에 전함.

7 호복을 유학.

총 9 번 우편을 명함.

전남 광주군 지방 행정 주사가 9 우 쟁

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

지방 행정 주사에 전함.

5 호복을 유학.

총 9 번 우편을 명함.

서울특별시 광